

# 2023년도 친환경설비투자 용자 사업 안내서

2023. 1. 19.



# 목 차

1. 사업 개요 .....	4
2. 사업 신청 .....	6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	13
4. 사업 관리 .....	16
5. 완료 보고 .....	16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	18
[붙임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	21
[붙임 3]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	22
[붙임 4] 친환경설비투자 용자신청 서식 .....	23
[붙임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25
[붙임 6] 용자 승인서 .....	26

# 사 업 안 내 서

## 1.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가능한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

### 나. 추진일정

- **(용자접수)** 2023년 2월 20일(09시) ~ 용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심사)** 접수 마감일 이후 7일간
  - ※ 용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심의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 연장 가능
- **(결과통보)** 심사일(접수 마감일 7일) 이후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제24조(용자금의 최초인출기간) 제2항에 따라 최초인출기간 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 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
- **(완료보고)** 용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 용자규모 및 접수규모

사업명	지원분야	용자규모	접수한도
친환경설비투자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총 1,000억 원	총 2,000억 원

### 라. 용자금 사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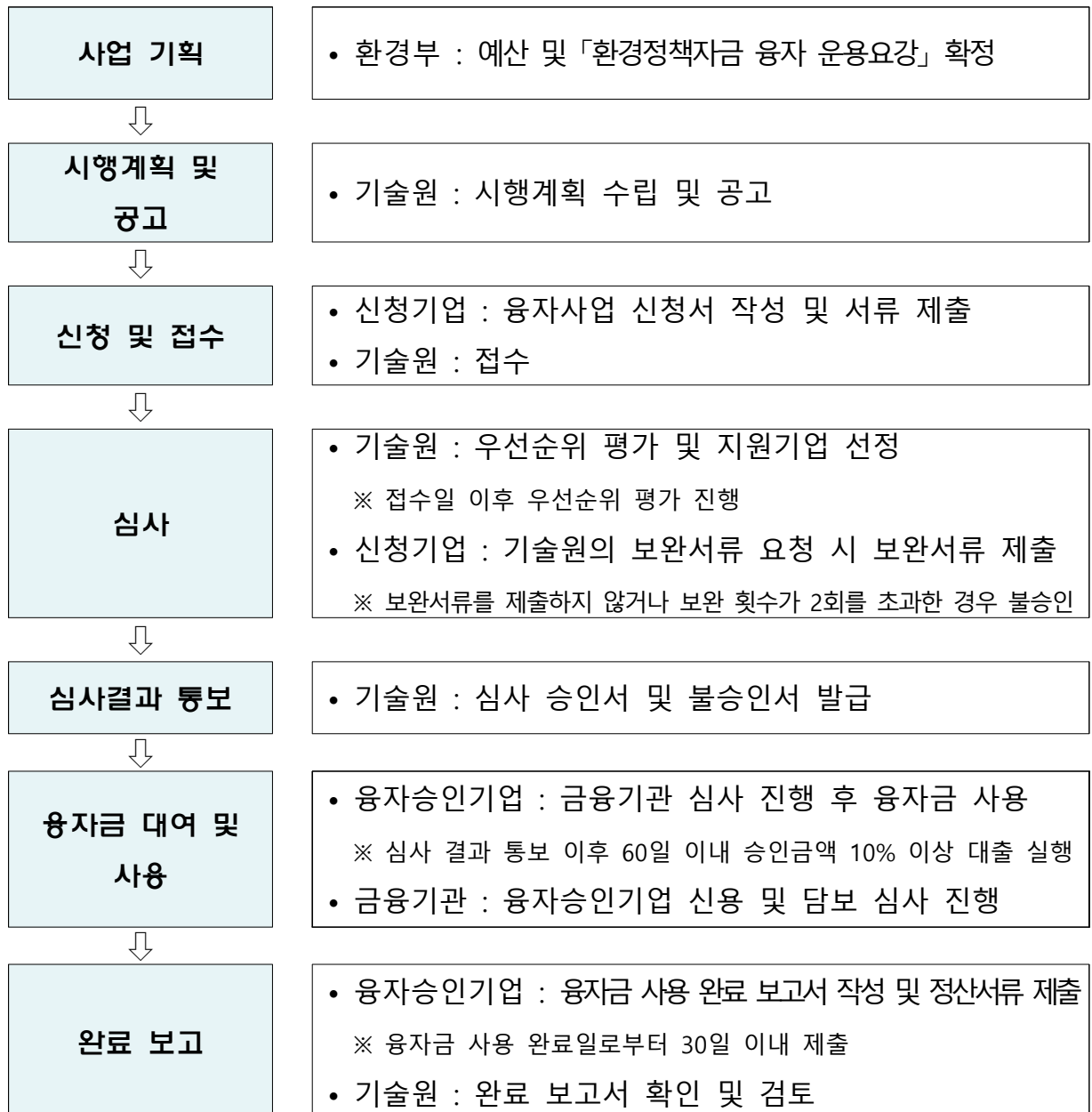
- 승인일로부터 ~ 180일 이내
  - ※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제20조(용자금 사용기간) 제2항에 따라 연장 가능

## 마.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용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 취급은행(15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가나다순

## 바. 추진 절차



## 2. 사업 신청

### 가. 신청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 동일 법인의 국내외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장비 등을 교체·신설하려는 중소기업

### 나. 신청 제외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 가능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제3조 제21호의 환경법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사업장 조업·영업 중지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
  - 제26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6조 제1항 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1조 제4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만료)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 제4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용기간 만료)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한 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 해당 시설
  - 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설치
  - 직전연도 10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에 해당하는 장치와 시설물
- (지원시설)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과 건축구조물로서 해당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토목공사, 설계, 부대시설 및 기존 시설 철거비 등 포함
  - 지원대상 시설과 함께 “계량기·계측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상 시설

대상 시설 구분	지 원 범 위
폐열회수 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li> <li>-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li> </ul>
차압터빈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li> <li>-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li> </ul>
인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및 냉동기 포함)</li> </ul>
고효율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li> <li>-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 가스히트펌프, 터보블로워 등</li> </ul>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li> <li>-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li> </ul>
가열로 및 열처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li> <li>-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li> <li>-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li> </ul>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li> <li>-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li> </ul>
공정가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li> <li>-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li> <li>* 식각·증착 공정의 HFCs(HFC23 제외), PFC, SF<sub>6</sub>, N<sub>2</sub>O(질산공정에 한함) 등</li> </ul>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li> <li>- 실온제어, 열원제어, 공조제어 등으로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li> </ul>
에너지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li> </ul>
폐기물전처리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li> <li>- 파쇄기, 선별기 등</li> </ul>
유체커플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li> </ul>

<b>온실가스 포집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설비</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공조기, 냉방기 등의 냉매 회수, 저장 장치 포함</li> </ul>
<b>신·재생 에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li> <li>- 신에너지 :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개질시설, 연료전지 등</li> <li>-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li> <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li> </ul>
<b>폐기물 열분해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li> </ul>
<b>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li> <li>-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li> </ul>
<b>증기 재압축 장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li> </ul>
<b>기 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자신청을 통하여 기술원 또는 유사 정책사업 수행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은 설비</li> <li>(예) 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li> </ul>

##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온실가스 감축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가. 산업	(1)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6)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 7 참조)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5)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6) 수소환원제철, (7) 비탄산염, (8) 혼합시멘트, (9)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10) 제로에너지 건축, (11)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12) 바이오차(Biochar), (13)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 7 참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운영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항(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나. 발전· 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태양광, (2) 태양열, (3) 풍력, (4) 수력, (5) 해양에너지, (6) 지열에너지, (7) 수열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3)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가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또는 (2)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과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한 가스
	(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7)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제조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8)	수소 제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9)	암모니아 제조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0)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4)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5)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P2H; Power to Heat)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1)	열에너지 저장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예,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12)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13)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4)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의 이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15)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16)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활용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선박을 도입하거나 해당 교통수단의 충전,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여객선, 도선, 여객 철도 포함
	(3)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 또는 무공해 철도차량을 도입하거나 관련 차량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택시,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택배, 화물트럭 등 포함
	(4)	무공해 선박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수상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선박을 도입하거나 무공해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여객 또는 화물의 (1) 육상, 철도 운송에 필요한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운송 인프라 또는 (2) 수상 운송에 필요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 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시설 등의 수상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신규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활동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마. 농업	(1)	저탄소 농업	식량, 채소, 과일,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 가공식품 제조	(1)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2)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
바. 이산화탄소 포집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이산화탄소의 포집, 처리, 영구격리 및 활용을 위한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바이오차* 생산 및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조건에서 300~350°C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서, 토양에 살포 시 토양 내 탄소저장 효과 발생

순환경제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가. 자원순환	(1)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폐자원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1)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2)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 (3)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재생이용(폐유 정제유, 폐금속 재자원화, SRF,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플라스틱 원료 등), (4)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활용, (5)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폐자원 열분해	폐자원을 열로 분해하여 원료 또는 연료를 만들거나, 그 원료 또는 연료를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메탄가스 활용	(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에너지, 연료, 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3) 운전자금(시설용자금의 10% 이내에서 운전자금 인정)

구분	지원 범위
인건비	• 종업원, 근로자 인건비(사업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
생산비	• 원료·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장치·설비 수리비 • 설비 가동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성 부품, 제품 구입비
가동비용	• 전기료, 가스, 유류비 등 공정 가동에 소요되는 에너지, 연료비
해외사업소	• 현지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현지 고용 외국인 제외) • 현지 영업소,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각종 비용

○ **(지원제외)**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 부지 매입(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국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취득세 등) 및 기타 증지 비용
-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 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에 의한 지출

- (용자조건)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 (대출금리) 2023년 1분기 현재 3.63%(분기별 변동금리)

##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s://konetic.or.kr/loan>), 첨부1 참조)

## 마. 제출 서류(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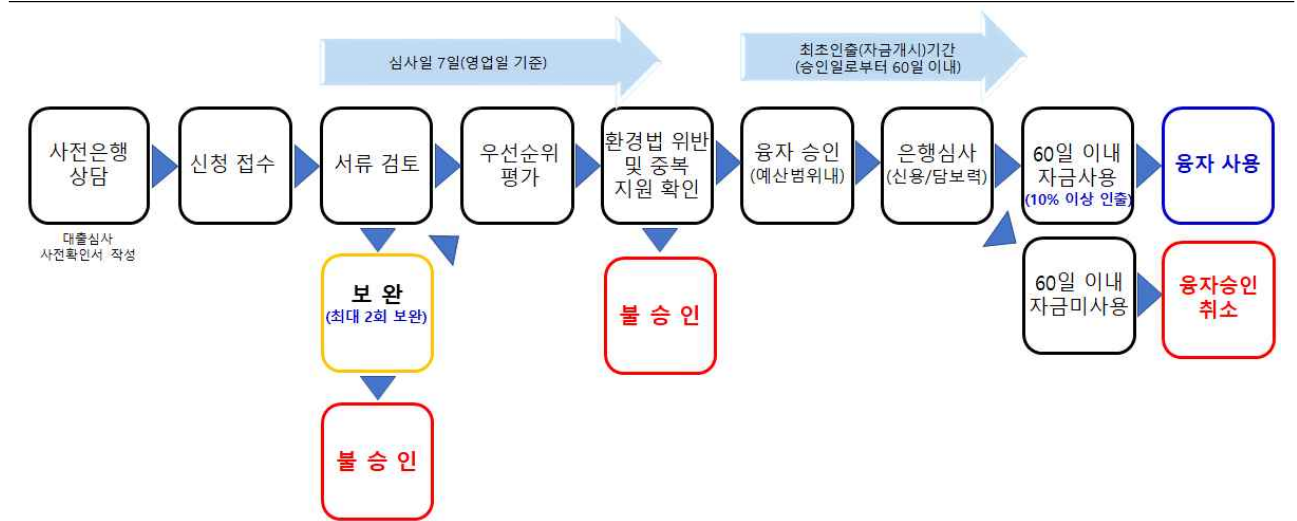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 &lt;서식 1&gt;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 로 등록</li> <li>※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용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li> </ul>
2	<서식2>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용자신청한다는 확인 서류</li> </ul>
3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a href="http://sminfo.mss.go.kr">http://sminfo.mss.go.kr</a>)에서 신청·발급</li> <li>•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a href="https://www.mme.or.kr">https://www.mme.or.kr</a>)에서 신청·발급</li> <li>※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li> </ul>
4	벤처기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li> <li>• 확인발급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a href="http://smes.go.kr">http://smes.go.kr</a>)에서 신청발급</li> <li>※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li> </ul>
5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li> <li>※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입 필요. 이때 누락, 부실, 부족한 경우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li> </ul>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8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별표 3]우선지원 순위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종류는 [별표 3] 참조</li> <li>※ 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li> </ul>
10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자금시스템 자료실에서 가이드 및 엑셀틀 참고</li> <li>※ 작성 엑셀 파일과 &lt;서식 5&gt; 파일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li> <li>•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사업 선정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감축설비보조사업 선정 통보 공문으로 대체 제출 가능</li> <li>- 위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기술원의 검토 절차 생략</li> </ul> </li> </ul>
11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li> <li>※ 자가시공(직접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li> <li>• 기성 제품 구매하여 자체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매처(판매처)의 사업자등록증</li> </ul>
12	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li> <li>※ 자가시공(직접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li> </ul>
13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팸플릿, 사양서 등</li> </ul>
14	용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li> </ul>

## 바. 주요 기타 사항

- (용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용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붙임 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 하고 용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붙임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용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을 따름

##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 가. 지원 절차



### 나. 지원 평가

#### ○ 용자지원 검토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 용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 심의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용자금 사용 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 이력 조회
  - ※ 환경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
  - 법령위반 이력 조회 기간 : 접수월 기준 과거 1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 중지(특정 장치·설비의 가동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 여부 조회

다.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구분	번호	내 용	제출 서류	점수
글로벌 성장성	1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선정 공문(환경산업협회)	5
	2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해당 지정서	1
	4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환경 기술 우수성	4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해당 증서	2
	5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6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환경부 사업 연계성	7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8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9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10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증서 (환경산업기술원)	1
	11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증서 (환경산업기술원)	2
	12	최근 5년 중소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13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내)		
	14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5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16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17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선정 공문(환경환경공단)	
	18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선정 공문(환경환경공단)	
19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해당 증서		
20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공문 (환경산업협회)		
사회적 가치 부합성	21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2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해당 증서	1
	23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	1
	24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25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또는 선정 공문	5

## 라. 대상기업 선정

- 신청 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선순위 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 < 우선순위 대상 >

1. 연계승인 기업
2. 환경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 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유효기간 5년 내) 기업
  - 나.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 후 성공 판정 기업
  - 다.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 라. ESG 컨설팅 지원 사업
  - 마.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사업 프로그램
  - 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 사.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 사업(Green Export)
  - 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사업
  - 차.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입주기업
  - 카.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3.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4.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5.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 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미반영
  - ※ 기술원은 기업에 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보완요청 2회 이내에 보완 처리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3년 융자금 예산 내에서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 4. 사업 관리

### 가. 지원기업의 대출신청

- 용자승인기업은 용자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승인서 상의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 최초인출기간 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 하지 못한 경우 승인금액의 전부 취소 가능

### 나. 사업 변경

- 용자승인기업은 용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s://konetic.or.kr/loan>)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용자사업자가 설계, 장치, 기자재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산출 내역서를 새로이 작성 제출
  - 사업 변경 : 기업정보 및 용자금 사용 내역, 사업 기간 변경
  - 사업 포기 : 용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 기술원은 용자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용자를 취소할 수 있다.

## 5. 완료 보고

### 가. 용자금 사용 완료보고

- 용자승인기업은 용자금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경정책 자금 지원시스템(<https://konetic.or.kr/loan>)을 통해 자금사용내역에 증빙서류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용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 나. 용자금 사용 성과보고

- 기술원은 사업 기간 완료일 이후 용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용자사용기업은 인터뷰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다. 완료보고 제출 서류

번호	제출 서류	용자금 사용 내역
1	용자지원 후 온실가스감축 효과 산출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되, 계측기 등을 통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li> <li>• 작성한 엑셀 파일과 &lt;서식 6&gt; 파일을 완료보고 작성 시 저장 등록</li> <li>• 정부 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 선정기업은 해당 기관에 제출한 공사완료 후 감축실적·결과자료로서 대체 가능</li> </ul>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li> <li>•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li> </ul>
3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내역 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li> </ul>
4	용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li> </ul>
5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지원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예시) 각종 시설 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을' 지) 등</li> </ul>
6	준공계 및 공사 완료 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용자지원 시</li> </ul>
7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용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li> </ul>

-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3.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4. 친환경설비투자 용자신청서
5. 온실가스 감축(예상) 계획 산출 내역서
6. 용자 예비승인서 끝.



# 붙임 1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및 용자신청 절차

화면예시	절차
------	----



- ①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https://konetic.or.kr/loan>) 접속
- ②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정보공개 사전 동의
  - 회원정보 입력
- ③ 공동인증서 등록
  - ID 로그인
  - 회원정보 수정
  -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 ④ 시스템 로그인



- ⑤ 용자 신청
  - 용자신청관리 → 용자신청
  - 분야 → 세부분야 선택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정책자금 담당자 등 입력
  - 신청서 작성 클릭



- ⑥ 용자신청서 작성
  - 기업 일반현황 및 신청내용 작성
  - 신청서 작성 후 임시저장 후 임시저장, 다음단계 클릭
  - ※ 사업장 주소는 실제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
  - ※ 환경산업특수분류는 '환경산업특수분류 정의서 및 연계표' 참조

화면예시	절차
------	----

용자신청서
우선심사순위
사업계획
개선실적
구비서류

**글로벌 성장성**

귀사의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미제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	구비서류	확인
·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 (환경산업협회)선정 공문	<input type="checkbox"/> 5점
· 환경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요기간내)	· 해당 지정서	<input type="checkbox"/> 1점

※ 3M 이하의 파일만 첨부가능

증빙서류(필수사항)	
증빙서류	[확인하기]

※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 (.zip, .hwp, .doc, .xls, .xlsx, .pdf, .jpg, .jpeg, .bmp, .lit, .gif, .pptx)

**환경 기술 우수성**

귀사의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미제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⑦ 우선심사순위 서류 제출
- 기업이 해당하는 우선순위 항목에 체크하고 구비서류 제출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반영

용자신청서
우선심사순위
사업계획
개선실적
구비서류

**Ⅲ. 사업계획**

1. 사업장 개요 ※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및 기업, 미확정 같은 예상지 기업 가능

영업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705 백만원	36 명	출 250 일, 1일 평균 8 시간

2. 추진 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3. 자금사용 내역 우측의 추가버튼을 활용하여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추가]

- ⑧ 사업계획 작성
- 사업장 개요
  - 추진계획
  - 자금 사용 내역 작성
  - ※ 전년도 매출액, 근로자 수 등 기업 현황 입력 필수
  - ※ 자금 사용 내역은 드롭다운 선택하고 세부 내용입력
  - ※ 총사업비 및 용자신청 금액은 '용자신청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용자신청서
우선심사순위
사업계획
구비서류

**NICE신용정보 원클릭 동의**

구비서류	내용	동의	동의여부
각종 세무 회계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거래처별 압계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도 인터넷상에서 동의완료 필요)	동의해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신청자금융 '확인되는 서류에 한해서만' 열람됩니다.  
· 업무처리담당자가 위 방문정보를 처리함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아래 구비서류 목록에서 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NICE신용정보 원클릭 동의를 취소하시려면 시스템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원클릭신청서 접수하기    기존 서류제출로그인

**3) 서류 제출** 빠른 클릭 한번으로 모든 서류 제출!

**oneclick**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로그인

기업정보    기업정보    기업정보    기업정보    기업정보

① 기업정보 및 제출서류 목록 확인

-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
- 기간 초과 협의된 상품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⑨ 구비서류 및 제출(1)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동의하기 클릭 후 나이스원클릭간소화시스템 안내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 원클릭4.0시스템설치 및 내용입력

화면예시	절차
------	----

○ 구비서류 목록 첨부파일은 항목당 최대 15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첨부서류가 누락될 경우, 『보완』 결정이 내려지며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별 업로드 파일 개수는 5개 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파일 최대 용량은 15Mbyte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zip, hwp, doc, xls, xlsx, pdf, jpg, jpeg, bmp, tif, gif, pptx)
- 첨부파일명은 특수문자 및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는 파일명으로 등록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등록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small>*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다운로드</small>	필수	
서약서 <small>*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다운로드</small>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NICE신용정보 원클릭에 동의하셨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선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최근 2개년)	선택	NICE신용정보 원클릭에 동의하셨습니다.

- ⑩ 구비서류 및 제출(2)
- 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등
  - 견적서 및 계약서
  - 시설, 건축 등 세부도면
  - 공사 현장 사진(1개월 이내) 등 융자금별 요청 제출 자료
- ※ 구비서류는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참조

정보개방    융자사업 소개    **용자신청 관리**    용자승인 관리    고객센터    담당자 안내

## 용자신청 및 결과 조회

▶ 용자신청 관리 > 용자신청 및 결과 조회

·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서조회     신청서출력     심사결과조회     승인서출력     승인서조회     예비승인서출력

선택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
<input type="checkbox"/>	2021-4210-00206	2021-11-23	

- ⑩ 용자신청 결과 조회
- 신청서, 심사 결과, 승인서 출력 가능
  - 신청서 조회 :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취소 가능
  - 심사결과 조회 : 승인, 보완, 불승인
- ※ 보완일 경우 보완항목 서류 보완 후 보완완료 클릭
- ※ 승인서는 은행 여신심사 시 출력 필요

**용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정보공개    융자사업소개    용자신청관리    용자승인관리    고객센터    담당자안내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환경산업 분야

사업설치자료 업로드  
보완지원자료 업로드

**접수중**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녹색전환 분야

**접수중**

친환경설비투자  
온실가스 배출저감설비 분야

**접수중**

청정대기전환시설용자  
청정대기 분야

**접수중**

2022년 **모의신청** ①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명함)

- [참고] 모의 신청 가능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모의 신청 클릭
  - 로그인정보(ID, 비밀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 공동인증서 로그인 불필요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융자금 신청 기업**

- 회사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표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i>2,000</i> 백만원	합계 : <i>2,500</i> 백만원

담보 종류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i>보증서</i>	<i>기술보증기금</i>	<i>-</i>	<i>1,000</i>
<i>부동산</i>	<i>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i>	<i>본인</i>	<i>1,500</i>



**융자금 취급 은행(영업점)**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예비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 *민간은행*                      지점 : *불광동지점*  
 소속 : *기업대부계*                  성명 : *차장 이환경*                  (직인)

##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용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용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용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 다. 용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 라. 용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신청기업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 나. 용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 다. 용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용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용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용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_\_\_\_\_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4**

**친환경설비투자 용자신청서<서식 3-4>**

친환경설비투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주소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선택수질 *중, 대기 *중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내용	용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용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용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00	전화번호	직접 입력		
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b>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b> 귀 하								

# 사업 계획서

##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_____일, 1일 평균_____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용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용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폐열·폐기물·부생가스	폐열회수설비, 가열로·열처리로, 폐기물열분해시설, 폐기물전처리장치, 공정 부생가스이용장치
에너지·연료	에너지고효율장치, 차압터빈시스템, 감축효과 연료로 전환
고효율 동력	인버터, 유체커플링, 증기재압축장치
관리제어	공정개선, 최적인전자동제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신에너지	수소보일러, 수소정제개질시설, 수소연료전지, 기타 신에너지 이용시설
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태양열시설, 풍력시설, 바이오에너지, 기타 재생에너지 이용시설
포집·처리	이산화탄소온실가스 포집장치, F가스공정가스 처리장치
기타감축설비	기타 감축효과 설비
측량측정	계측기, 계량기, 유량계
토목·건축	설비부지 조성공사, 철골구조물, 건축(가설)구조물, 설계엔지니어링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기계장치, 설계엔지니어링, 철거비용, 기타 비용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온실가스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기대효과(연간)	비고 (융자지원 받은 온실가스 저감 시설 기재)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 (tCO <sub>2</sub> -eq)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 (tCO <sub>2</sub> -eq)	온실가스감축량 (tCO <sub>2</sub> -eq)	
1								
2								
3								
4								
5								
합계								

**에너지 절감 계획** ※ 에너지·전력 절감을 통한 상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드시 기재

NO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연간)				개선후 에너지사용량(연간)				기대효과(연간)		비고 (융자지원된 에너지절감 설비 기재)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 톤 (toe)	에너지 사용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toe)	절감액 (백만원)	
1											
2											
3											
4											
5											
합계											

기타(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대효과 여부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 상기 감축량, 절감량 산출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반드시 “구비서류” 항목에서 등록 제출



**붙임 6**      **용자 예비승인서<서식 4>**

승인번호		승인일자		<h2 style="margin: 0;">친환경설비투자용자 예비승인서</h2>		
2020-4110-1234-0		2020-05-08				
상호(업체명)	영일00(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000-00-0000		지원분야 1	녹색전환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지원분야 2	오염방지시설자금		
용자지원사업장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본사/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3		본사 사업자번호	123-85-67490		
예비승인내용	예비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구분1	구분2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기계공사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전기공사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일상인터내셔널	34,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공란					
	최초인출기간	2020-08-14 ~ 2020-10-1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용자금사용기간	2020-08-14 ~ 2020-12-31		대출금리	분기 변동금리	
<b>중요사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비승인'은 <b>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b></li> <li>2. 용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용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3. 용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li> <li>4. 용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용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b>허가</b> 없이 무단사용 시 용자승인 취소 및 용자금 강제회수</li> <li>5. '시설'에 대한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li> <li>6. 최초인출기간 내 용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용자승인 취소</li> <li>7. 사용기간 내 용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li> <li>8.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용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b>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b>,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용자지원 불가.</li> <li>9. 당해연도 용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용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용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용자금의 지원이 가능</li> <li>10. 용자승인 기업은 용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환경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용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li> </ol>						
<p><b>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금 지원을 예비승인합니다.</b></p> <p>발급일    2000-00-00</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0 2px;">인</span></p> <p>출력일    0000-00-00</p>						